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여행자 휴대품 일제(一齊)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세관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증원하고,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2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8명(5급 1명, 6급 6명, 7급 8명, 8급 7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3명, 전문경력관 다군 12명) 및 35명(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3명, 전문경력관 다군 12명)을 각각 증원하며,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산세관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군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5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4명),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80명(6급 3명, 7급 6명, 8급 6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 전문경력관 다군 58명), 김포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용당세관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 인천세관에 필요한 인력 23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6명) 및 평택세관에 필요한 인력 1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

군 9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불법 총기 위험관리 및 정보분석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세청에 필요한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국제우편물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8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1명)을 증원하며, 우편집중국 국제우편물 2차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25명(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0명), 김해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 및 용당세관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여행자 휴대품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91명(6급 16명, 7급 22명, 8급 22명, 9급 7명, 전문경력관 다군 24명), 김포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 청주세관에 필요한 인력 7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김해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 대구세관에 필요한 인력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및 제주세관에 필요한 인력 14명(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수입화물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6명(6급 2명, 7급 6명, 8급 4명, 9급

4명), 인천세관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및 평택세관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각각 평가 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69”를 “371”로 하고, 일반직 계 “368”을 “37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58”을 “360”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037”을 “5,487”로 하고, 일반직 계 “5,037”을 “5,4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11”을 “4,874”로, 전문경력관 “420”을 “607”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직	정원
1) 인천공항세관 1개 과	12명
2) 인천공항세관 1개 과	10명
3) 부산세관 1개 과	10명
4) 인천세관 1개 과	5명
5) 서울세관 1개 과	6명
6) 인천공항세관 1개 과	23명
7) 인천공항세관 1개 과	38명
8) 인천공항세관 1개 과	35명

별표 4 제2호나목에 5)부터 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40명
6) 국제우편물 2차 현장검사(세관관서)	30명

7) 여행자 휴대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29명
8) 수입화물 현장검사(세관관서)	36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69</u>	<u>371</u>	+2
·	·	·	
·	·	·	
일반직 계	<u>368</u>	<u>370</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58</u>	<u>360</u>	+2
·	·	·	

[별표 3]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037</u>	<u>5,487</u>	+450
일반직 계	<u>5,037</u>	<u>5,487</u>	+450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611</u>	<u>4,874</u>	+263
전문경력관	<u>420</u>	<u>607</u>	+187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5